

광주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나53077(본소), 2021나669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윤성웅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자빈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5.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27. 선고 2020가단53133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7. 접수 제40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본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 제381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매매잔대금 및 이자로 하여 283,472,470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11.

11. 이의유보사유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일부’를 들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이에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위 공탁금마저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제1심에서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인 부당이득금의 존부는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된 바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2021. 10. 12.자 답변서로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